

대구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2112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3. 5. 17 선고 2021나2134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211212 판결

전 문

원 고 1.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2.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변 론 종 결 2020. 12. 17.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561,680,464원 및 그 중 561,680,058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9. 7. 2. 접수 제88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9. 7. 2. 접수 제157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9. 7. 3. 접수 제8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라.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9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3. 22.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A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5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20. 3.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019. 4. 1. 이후 연 8%),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A는 2019. 10. 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11. 12.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563,534,39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1,854,339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잔액은 561,680,058원이며, 회수된 금액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406원이다.

다. A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순번 4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순 번	대상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또는 거래가액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9. 7. 2.	2019. 7. 2. 설정계약	3억 원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9. 7. 2.	2019. 7. 2. 설정계약	7억 원
3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9. 7. 3.	2019. 7. 3. 설정계약	10억 원
4	"	소유권 이전등기	2019. 7. 11.	2019. 7. 10. 매매	2억 3,000만 원

라. A는 2019. 10. 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57), B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A의 관리인 B(이하 ‘원고 관리인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의 계속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9. 7. 16. A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로부터 분할된 회사로서 A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구상금 합계 561,680,464원(잔존 대위변제금 561,680,058원 + 확정 지연손해금 40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61,680,05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9.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1.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회생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고, 위와 같은 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바,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물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547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위 대법원 2014다181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다 제6 내지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2019. 8. 6. A의 본점 소재지이자 사업장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뒤이어 위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점, ② A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19. 10. 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점, ③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57)에 의하면 A는 2019. 11.경 기준으로 자산이 8,749,833,374원, 부채는 10,370,978,241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④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어음부도를 막기 위해 피고 D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야 했던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피고 D에게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결국 원고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배당재원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A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위의 상당성 등에 관한 주장

가)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A가 2019. 7. 1. 피고 D으로부터 신규자금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어음 결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부득이하게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행위에 상당성이 있어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및 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 활동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 그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살피건대, 을다 제1, 6 내지 8호증에 의하면 A가 2019. 7. 1. 피고 D에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D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이 2019. 7. 1., 같은 달 8일 및 25일 A 명의 계좌로 합계 6억 원을 송금한 사실, A가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6억 원의 대부분을 어음 결제 및 임금 지급에 사용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D은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10억 원 중 6억 원만 A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②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기존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③ A는 피고 D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019년 2월~7월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2019년 1월~6월 발행한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차용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으로부터 신규로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는 기존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기한을 유예받은 것과 다르지 않고, A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점까지 보태어 볼 때, A의 계속적 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 회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새로 유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변제한 기존 채무의 내용이나 변제의 실질적인 효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자금의 차용이 객관적으로 A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상당한 행위라는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을다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D은 2019. 7. 1. A와 사이에 A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2021. 6. 30. 및 2021. 12. 30. 각 3억 원, 2022. 6. 30. 4억 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인 2019. 7. 10.경 2억 3,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대물변제계약으로서 그로 인하여 A의 책임재산은 감소하였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유해성을 정당화할 만큼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당한 행위라는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이 선의라는 주장

가) 피고 D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가 채무초과상태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수익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D의 대표이사와 A의 대표이사가 모두 E로 동일인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의 다른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 D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원고 관리인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부인권의 행사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인되는 이상 피고 D은 원고 관리인 B에게 위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관리인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옥도, 판사 김미란, 판사 노재승

별지1

1. 경상북도 성주군 F 공장용지 8285㎡

2. 경상북도 성주군 G, H, I, F J동호

J동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일반공장 990㎡

3. 경상북도 성주군 G, H, I, F K동호

K동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일반공장(창고, 사무실) 990㎡

별지2

1. 경상북도 칠곡군 L 공장용지 7306.5㎡

2. 경상북도 칠곡군 L M동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647.68㎡

3. 경상북도 칠곡군 L N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337.2㎡

2층 286.8㎡

별지3

별지3

경상북도 성주군 O J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분뇨,쓰레기처리시설 700㎡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6.9㎡ -이상-

